

보도자료

2010년 9월 17일(금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송상훈과장(2190) 나.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과장(2530)

[보고안건]
가.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과장(2550) 나.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과장(2570)

2010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
○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시행(‘10.9.23)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과 근거 규정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- 전기통신 등 용어를 방송통신 등으로 변경하고, 전기안전 기준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표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시로 위임

※ IEC(International Electro-technical Commission) : 전기,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표준 제정 및 보급 등을 수행

나.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첨부1 참조)

○ 기간통신사업(와이브로) 허가신청 사업자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[보고안전]

가.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2 참조)

-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(이용자 보호) 및 시행령 제37의 2에 따라, 선불통화서비스 발행 시 피보험자 지정,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 기준,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※ 선불통화서비스: 전화카드,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

나. 「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」 (고시)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3 참조)

-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(설비등의 제공)에 따라,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< 첨부1 >

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

-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의 와이브로 사업 -

1. 경과사항

- '10. 6. 11 KMI 와이브로 사업 허가신청
- '10. 7. 9 주파수 할당공고시까지 허가신청 적격결정 보류
- '10. 7. 29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 위원회 의결
 - ※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은 3개월로 하고, 주파수 할당신청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한 법인에 대해서는 양자를 병합하여 심사
- '10. 8. 4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공고 (3개월)
- '10. 8. 11 KMI의 주주구성 관련 보정자료 제출요청 (9.1 재요청)
- '10. 9. 6 KMI 주주변동에 따른 허가심사 보정자료 제출 및 주파수 할당신청

2. 허가심사

가. 허가방법

- KMI 허가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 종료 전에 실시
 - ※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의 평가결과 점수를 주파수 할당심사에 적용하여 병합심사 취지 반영

나. 허가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

허가심사는 허가신청적격심사(예비심사)와 사업계획서 심사(본심사)로 구성

- 허가신청 적격 심사
 - (심사내용)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(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, 외국인 지분제한(49% 초과소유) 여부 심사
 - (심사위원 구성) 법률·회계 전문가 등 3~4명으로 구성

○ 사업계획서 심사

- (심사위원 구성) 법률·경제·회계·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심사위원 구성

※ 대한변호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, 학회에 심사위원 추천 의뢰

- 재정적 능력,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참여 확대 (종전 1~2명 → 4~5명)

- (심사기준 및 평가) 영업계획의 타당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※ 심사항목별 100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,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결정

3. 향후 일정

- 2010. 9~10월 :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
- 2010. 9~10월 :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 선정(위원회 의결)
- 2010. 11월 이후 : 허가여부 및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 선정(위원회 의결)

〈 첨부2 〉

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 주요내용

□ 피보험자 지정

- 선불통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’로 지정
 - 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’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
별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지원업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
경험을 보유하여 피보험자 역할에 적합

※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, 보상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

□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마련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안)은 선불통화 사업자가 선불발행 총액의 범위
안에서 50%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을
고시로 위임
- 현재 선불발행 총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, 개
정법은 건실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선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
사업자의 자산규모 및 선불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가입토록 규정

〈선불통화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〉

보험가입금 산정조건		당해연도 보험가입금액
전년도 순자산 규모	$\frac{\text{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}}{\text{전년도 전기통신역무매출액}}$	
30억원 이상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
	10%-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30억원 미만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10%-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8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
※ 가입금액 산정기준은 전문가 회의 및 기존 사업자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수행
(2010년, ETRI)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면서, 이용자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마련

□ 보상금 지급 절차

-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보상 공고, 이용자의 보상 신청, 보상금 산정 및 산정결과 통보, 지급 절차를 규정

□ 향후 일정

- '10. 9월 말 :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- '10. 10월 초 : 위원회 의결 및 시행

「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」 개정안

□ 배 경

-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전력, 한국도로공사 등 시설 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설비 제공에 필요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-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시 필요한 제공 범위와 절차 및 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
 - 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전주, 관로 및 광케이블 등임
 - 전문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(KTOA)를 지정하여 설비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하도록 함

□ 기대 효과

- 통신사업자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여유 통신설비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

□ 향후 일정

- '10. 9월말 :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- '10. 10월 초 : 위원회 의결 및 시행